

부령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4조의2) 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을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국·○○국), 외국산(○○국·○○국·○○국 등), 외국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연장”을 “연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5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연장”을 “연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물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제4조의3(과징금 부과·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① 영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생략) <부칙> <신설>	-. ----- -----. ② 영 제5조의3제5항----- ----- 연기 -----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 ----: 2027년 1월 1일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현행	개정안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

현행	개정안
을 따른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을 따른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별표 4】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1. 공통적 표시방법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넉치"만을 사용합니다. 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3조제2호 관련) 1. 공통적 표시방법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넉치"만을 사용합니다. 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

현행	개정안
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 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넉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 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 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넉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 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현행	개정안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족(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듬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마.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인 생산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족(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듬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마.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인 생산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

현행	개정안
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u>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u>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u>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국·○○국), 외국산(○○국·○○국·○○국 등), 외국산"으로</u>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현행	개정안
생략할 수 있다. 아. 삭제 <2017. 5. 30.>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	생략할 수 있다. 아. 삭제 <2017. 5. 30.>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

현행	개정안
cm × 42cm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라) 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u>표시</u>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cm × 42cm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라) 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u>표시할 것</u>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현행	개정안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1)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4)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1)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

현행	개정안
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팸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쇠고기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젓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팔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팸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쇠고기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젓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현행	개정안
[예시]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나) 외국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	[예시]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나) 외국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

현행	개정안
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 나)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나. 쌀(참쌀, 현미, 찰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의 경우 "밥(쌀:	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 나)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나. 쌀(참쌀, 현미, 찰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의 경우 "밥(쌀:

현행	개정안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로 표시한다. 2) 외국산의 경우 쌀을 생산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다.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1)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2)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로 표시한다. 2) 외국산의 경우 쌀을 생산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다.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1)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2)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현행	개정안
사용한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방법: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국내산) 2)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사용한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방법: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국내산) 2)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현행	개정안
2)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2)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3)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3)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바.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다.	바.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신청서	과징금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다.												
<table border="1"> <tr> <th>접수번호</th><th>접수일</th><th>처리기간</th></tr> <tr> <td></td><td></td><td></td></tr> </tabl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table border="1"> <tr> <th>접수번호</th><th>접수일</th><th>처리기간</th></tr> <tr> <td></td><td></td><td></td></tr> </tabl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주민등록번호</td></tr> <tr> <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abl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주민등록번호</td></tr> <tr> <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able>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과징금 부과내용</td><td>납부통지서 발행번호</td></tr> <tr> <td>과징금 부과금액</td></tr> <tr> <td>납부기한</td></tr> </table>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과징금 부과내용</td><td>납부통지서 발행번호</td></tr> <tr> <td>과징금 부과금액</td></tr> <tr> <td>납부기한</td></tr> </table>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과징금 부과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신청사유 신청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장 ☐ 을(를) 신청합니다.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기 ☐ 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 구청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 구청장												
<table border="1"> <tr> <td>첨부서류</td><td>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table border="1"> <tr> <td>첨부서류</td><td>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